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장애인 보장구 무료수리사업 추진 약정서(안)

장애인복지법제18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에 대하여 생활편의증진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장애인보장구 무료수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이하 “계약자”이라 한다)은 지정업체 2개소(이하 “계약상대자A”와 “계약상대자B”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이 약정서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A”와 “계약상대자B”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과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약정서에 있어서 “수행기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 장애인의 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스쿠터) 수리를 위해 “계약자”가 지정한 전문업체를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이 약정서의 규정은 “계약자”가 “계약상대자A”와 “계약상대자B”에게 위임한 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스쿠터) 수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 4 조(약정기간)

- ① 약정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약정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이 약정서의 효력은 소멸한다.

제 5 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내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수동휠체어·전동스쿠터(휠체어)의 소유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제 6 조(준수사항)

- ① “계약상대자A”와 “계약상대자B”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자”는 “계약상대자A”와 “계약상대자B”에게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A”와 “계약상대자B”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A”와 “계약상대자B”는 민원인(장애인 등)의 상담·문의 등에 대하여 성의를 갖고 친절히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A”와 “계약상대자B”는 민원인(장애인 등)의 휠체어 등 수리요청 시 직접 내방하여 휠체어 등을 수거하고 수리(교체)완료된 물품은 민원인(장애인 등)에게 내방하여 납품 처리한다.
 4. “계약상대자A”와 “계약상대자B”의 “사업”수행은 평일 월~금요일(09:00~18:00), 토요일(09:00~15:00)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일이 법정 공휴일 등으로 휴무인 경우는 익일 처리하되, 급박한 경우 긴급 출동하여 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A”와 “계약상대자B”는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인(장애인등)에게 부당하게 금품 등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A”와 “계약상대자B”는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업, 휴업, 업종변경 등을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사업”수행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약정서에 의한다.

제 7 조(지도감독)

- ① “계약자”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A”와 “계약상대자B”는 이에 응해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A”와 “계약상대자B”는 수리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보장구 수리의뢰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보장구수리신청등록대장을 기록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이를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8 조(수리비 연간 지원범위)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차상위계층 포함)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연간 300,000원(출장비, 공임 포함), 일반 장애인에 대하여는 연간 200,000원(출장비, 공임 포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장애인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수리비청구 및 지급)

- ① “계약상대자A”와 “계약상대자B”는 매월 수리한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청구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보장구수리내역서 및 관련서류(제7조2항 별지 제1호서식 사본 각1부)를 첨부하여 익월 5일까지 할인 수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② “계약자”는 “계약상대자A”와 “계약상대자B”가 수리비를 마지막으로 청구할 때 연간 수리비를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계약상대자A”와 “계약상대자B”에게 수리비를 지급한다.
- ③ “계약자”는 “계약상대자A”와 “계약상대자B”가 청구한 수리비를 확인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매월 20일까지 “계약상대자A”와 “계약상대자B”의 지정계좌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 조(약정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계약자” 은 사실 확인 후 서면으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A” 와 “계약상대자B” 가 제6조 제1, 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계약상대자A” 와 “계약상대자B” 가 회사정리 또는 파산을 신청하거나, “계약상대자A” 와 “계약상대자B” 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3. “계약자” 와 “계약상대자A” 와 “계약상대자B” 가 다 같이 약정 해지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 약정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제 11 조(책임한계) “계약상대자A” 와 “계약상대자B” 는 수리센터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이를 “계약자” 에게 책임을 전가 할 수 없다.

제 12 조(보칙)

- ① 이 약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복지사업 처리지침을 준용하며, 약정상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 의 해석 및 일반적 통념에 따른다.
- ② 이 약정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3부를 작성하여 “계약자” 와 “계약상대자A” 와 “계약상대자B” 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 1. .

“계 약 자”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168-6)
서울시 서대문구청장 (인)

“계약상대자A” 주소 : ○○시 ○○구 ○○동 ○○-○○
○○○ 대표 ○○○ (인)

“계약상대자B” 주소 : ○○시 ○○구 ○○동 ○○-○○
○○○ 대표 ○○○ (인)